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29호 / 04월 21일

중국 비국유경제의 성장 및 정책환경 변화

1. 개요

- 2002년 중국의 비국유경제는 수출증가, 고정자산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13.2% 성장함으로써 1997년 이래 최고를 기록함.
 - 비국유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32.6%와 29.0%, 고정자산투자는 21.6% 증가함. 전체 공업생산증가액 중 비국유기업의 비중은 74%,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 중 비국유기업의 비중은 각각 62.3%, 61.2%임.
- 작년도 비국유기업의 빠른 성장은 중국정부의 관련 정책 및 법규 제정 등으로 비국유기업에 대한 제약요인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임.
 - 제1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黨章에 비공유제경제의 정치·경제적 위상 제고 명시 및 개인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착수
 - 민간투자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, 반독점 개혁 가속화, 인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난 해소 지침 발표 등

2. 비국유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

□ 2002년 규모이상 비국유공업기업은 분기별로 성장속도가 증가하여 1997년 이래 최고의 성장을 기록함.

- 2002년 규모이상(매출액 500만 元 이상)의 비국유공업생산액은 13.2%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.9% 포인트 증가함. 분기별 성장률은 1/4분기 11.3%, 2/4분기 12%, 3/4분기 12.5%, 4/4분기 13.2%임.
- 경제유형별로는 주식제기업이 14.4%, 집체기업이 8%, 주식합작제 기업이 10.5%, 삼자기업이 13.3% 성장함.
- 규모이상 비국유기업의 성장률은 국유기업과 국유지주기업의 그것보다 각각 0.6% 포인트와 1.5% 포인트 높음.
- 2002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증가액 중 비국유기업(국유지주기업 포함)의 비중은 74%에 달하는바, 이는 2001년 대비 4.7% 포인트, 1998년 대비 23.3% 포인트 증가한 것임.
- 이중 주식제기업이 36.8%, 삼자기업 25.7%, 집체기업 8.8%, 주식합작제 기업 2.7%를 기록함.
- 특히 비국유공업 중 국유지주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.
- 국유지주기업을 국유기업에 포함시킬 경우 공업증가액 중 비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.2%로 감소하고, 국유기업의 비중은 52.8%로 늘어남.

□ 2002년 비국유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32.6%와 29.0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
- 중국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비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.3%, 61.2%임.
- 한편, 중국전체 수출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52.2%, 집체기업 5.8%, 사영기업이 대부분인 기타기업은 4.3%를 차지함.

□ 비국유기업에 대한 단기대출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증가속도는 감소함.

- 2002년 비국유기업(향진기업, 개체기업, 삼자기업)의 단기대출은 9.8% 증가하여, 전체 단기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.7%임.
- o 경제유형별로는 향진기업이 23.1%, 개체기업 8.2%, 삼자기업 -13.2% 증가함.

□ 비국유부문의 고정자산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.

- 2002년 비국유경제의 고정자산투자는 21.6% 증가하여 전체고정자산투자(16.1%)와 국유 및 기타부문(17%)의 투자증가율보다 훨씬 높음.
- o 그 중 집체경제와 개체경제, 기타경제의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11.8%, 15.7%, 31% 증가함.
- 전체고정자산투자 중 비국유경제의 비중은 55.2%임.
- o 그 중 집체기업이 13.7%, 개체기업14.5%, 기타경제 27%를 차지함.

3. 비국유기업 관련 정책 및 법률 변화

□ 2002년 비국유기업 관련 정책과 법률 등의 제정은 비국유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.

- 제16차 당대회에서 개체, 사영 등 비공유경제의 정치적·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, 생산기여도에 따른 분배원칙을 확정함.
- 개인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에 착수함.
- o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심의중인 “민법초안”에서 국가소유권, 집체소유권, 개인재산권 보호를 법률로 명시해야 해야 한다고 제안.
- o 또한 개인소유권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

-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국전인대가 “중소기업촉진법”을 통과시킴.
- 외국인투자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동등한 시장진입 여건을 마련함.
 - o 국무원은 WTO 규정이 반영된 “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”과 “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” 및 추가문건을 공포, 외국인투자의 진입 영역을 확대함.
 - o 국가계획위는 “민간투자의 촉진과 인도에 관한 몇 가지 의견”을 발표, 국가가 예외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영역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함. 또한 전 분야의 현행 투자우대정책을 민간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.
- 반독점 개혁을 가속화하고, 서비스무역 개방 관련 법률 정비를 강화함.
 - o 전력, 철도, 민항, 전신, 공공사업 등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고, 서비스무역(독점업종 포함)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민간자본 유치정책 제정을 추진 중임.
-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인수합병을 장려함.
 - o 외국기업이 주권인수나 자산매입을 통해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,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유기업의 주식 및 자산 매각을 허용함.
 - o 산업정책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주권비율 제한을 완화하며,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업주권이나 실물자산, 채권 등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.
 - o “외국인투자를 이용한 국유기업 개조에 대한 잠정규정”, “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리규정”, “외국인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”, “중외합자금융기관의 관리방법” 등 문건을 공포함.
- “역외기관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관리 잠정방법”을 시행하는 등, 국내 증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추진함.
- 인민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난 해소를 위한 열 가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비국유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을 적극 권장함.(***)